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을 위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도 불림.
-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으며, 이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이에, 오산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느린학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년 4월 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674호
----------	---------

발의년월일 : 2022년 4월 7일

발의의원 : 김명철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영희,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 제안이유

-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을 위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도 불림.
-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으며, 이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이에, 오산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느린학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산시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3.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 ④ (생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